

서울고등법원

제 2 행정부

판 결

사 건 2008누324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대표자 사장 최영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창원시 상남동 75-4 대표이사 이두원
대표이사 시드의

지배인 윤상욱

제 3 참가인 1.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2.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3. 성원건설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4.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5.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동 242-10

제3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5. 선고 2008구합7090 판결

변 론 종 결

2009. 8. 14.

판 결 선 고

2009.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3참가로 인한 부분은 제



3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밑에서 여섯째 줄의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3참가인들의 주장"으로 고쳐 쓰고, 6쪽 여섯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는 한편,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도급내역서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내역이 정리된 것이고, 하도급내역서는 공정별로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이며, 원·하도급대비표는 공정별로 위 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에 관한 내용이 서로 비교, 대조하기 쉽게 표로 정리된 자료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원·하수급업체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발산지구 1, 2, 3, 6단지 및 장지지구 10, 11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이미 공개한 바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당해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3참가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한 원·하수급업체의 원가경쟁력이 경쟁업체에 알려짐으로써 추후 원·하수급업체가 다른 공사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일 뿐(제3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별 단가가 지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공정별 단가는 물가 변동 등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원·하수급업체가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는 일반적으로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 당해 공사수행능력을 채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입찰가격이 절대적인 낙찰자 선정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3자가 정보주체인 정보는 당해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하여 공개하지 않을 권한이 공공기관에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제3참가인들은 위 제7호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는 원고의 입증의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 측의 입증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며,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 및 제3참가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거나 그 근거가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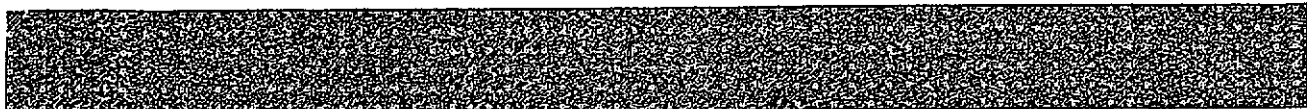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기석	_____
	판사	이상윤	_____
	판사	박종욱	_____





목 록

1. 상암3공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상암3공구 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3. 상암3공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4. 상암3공구 4단지 및 불광1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5. 상암3공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6. 장지지구 택지조성공사
7. 발산지구 택지조성공사
8. 발산지구 4단지 및 중암3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9. 장지지구 3단지 및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조달발주)
10. 발산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1. 발산지구 6,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2. 발산지구 5,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3. 발산지구 2,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4. 장지지구 10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5. 장지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6. 장지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7. 장지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8. 장지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9. 장지지구 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0. 장지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1. 장지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2. 장지지구 2단지 및 미아2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끝.



정본입니다.

2009. 9. 23.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 윤 경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